

이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에 관한 규정

제정 2020년 12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4 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이하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이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교육연구단(이하 'BK21 Four 교육연구단 혹은 교육연구단')의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 Four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제 1 조 (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 기준 요건에 준하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타 교육연구단 2인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가. 참여교수의 업적평가
- 나. 참여교수 교체에 관한 사항
- 다.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교육부 4단계 BK21사업 관리요령에서 정한 사항
- 바. 기타 본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 3조 (소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 평가위원회)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정과 인력양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가. 국내외 최신 미래자동차 기술수요를 수집하고 이를 교과과정 개선에 활용, 관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

나. 교과과정 전반의 운영계획 수립, 핵심/융합교과목 및 산학협력 교과목 개설/관리 등의 역할 수행.

다. 교과과정 수립 및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해결 필요 기술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교육 목표, 교과과정 수립 (2020년 9월부터 2년 단위 실시).

라. 글로벌 표준 준수 문제 해결형 교육목표를 설정, 교과과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ACM/IEEE 표준 권고안 및 국내외 우수 대학 교과과정과의 비교/분석 매년 수행.

마. 우수 대학원생 및 신진인력 확보 계획 수립 및 관리.

2)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진흥과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가. 연구진흥을 위하여 핵심분야 및 융합분야의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 및 연구교류회를 개최하며 연구실 간 벽을 허물고 공동연구를 통한 높은 질적 수준의 연구를 지원함.

나.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분석 및 평가를 단순 지표에서 벗어나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에 피드백.

다.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게재료 지원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우선 순위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함.

라. 신규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학생 간, 교수 간 교류 활동 활성화 역할 담당.

마. 국내외 벤치마킹 대학의 연구결과물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연구주제 발굴 지원.

바. 핵심 및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초 및 심화 교과목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피드백함.

사. 실용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제화 및 대외협력 위원회로부터 수집된 사회적으로 요구사항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참여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3) 국제화 및 대외협력 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와 교육의 산학협력과 국제협력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가.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국제교류, 석학 활용,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추진.

나. 연구인력의 중장기 해외 대학 방문연구, 인력양성사업 참여 등 국제공동연구 활동 지원.

다. 참여교수들의 초청 강연, 국제학술지 활동, 국제공동연구, 국제교류 등 국제활동 활성화

화 지원.

라. 산업계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중점교수(또는 연구교수)를 초빙하여 중점 추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 추진.

마. 산업체 수요기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교육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에 피드백하고, 산업체와의 공동융합과제를 상시 발굴함.

바. 산학공동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 추진.

사. 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4)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연구단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피드백 및 개선, 성과에 따른 포상 제도 운영 등이다.

가. 평가위원회는 업적 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나. 사업계획수립(Plan) → 사업시행(Do) → 성과 자체평가(See) → 운영개선(Feedback) → 사업계획수립(Plan)의 사이클링 5단계로 구성되는 지속적인 성과개선 체계 수립 및 적용.

다.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라. 우수 성과 인력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대상 평가.

마. 매년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한 사업단 전체 개선 방안 수립.

사.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 유지/교체를 통한 실적 개선 도모.

아. 세계 최고 수준의 ICT-미래자동차 대학원이나 연구그룹과의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교육연구단 시스템을 개선.

제 4 조 (참여교수회의)

1) 본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학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나.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중요사항

제 5 조 (교육연구단장)

1) 교육연구단장은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 실적이 교육연구단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전공(학과) 학사조직의 장을 겸임함을 권장한다.

3) 단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교육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1) 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있어 대학본부(총장/산학협력단장)와 유기적 연계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2) 단장은 참여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연구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3) 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제 7 조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

1)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안건에 따라 제 4조의 참여교수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2)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과 교육연구단 내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가. 교육연구단 예산의 구성에 관한 결정
- 나. 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
- 다. 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구성에 관한 결정
- 라. 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결정

3)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단 구체적인 경쟁체제는 예산과 교육연구단 전략에 따라 정한다.

4) 부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장을 보좌한다. 단장 부재 시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1) 참여교수 수는 4단계 BK21사업 선정 평가 시, 선정된 교수 수를 유지한다. 사업 개시 최초 참여교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교육연구단 참여를 보장한다. 사업기간 중 매년 1월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년도 사업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평가에 의거하여, 차년도 참여교수를 선발한다. (단, 3차년도 참여교수 선정 평가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평가 대상은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전기컴퓨터공학과 내 ICT-미래자동차 관련 교수이며, 평가위원회는 모든 후보 교수들의 전년도 사업 기간 (1년 간) 업적을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제 9조에 근거하여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평가 기준에 준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결정한다.

3) 참여교수 신규 총원 및 변경 시는 「4단계 BK21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총원 및 교체한다. 다만, 단장과 부단장은 평가 후 교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교육부지침 교육부 훈령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27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나” 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가.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나.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다.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제 9 조 (참여교수 평가)

1) 참여교수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결정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 90%, 교육연구단 기여도 10%로 나누어 평가한다.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 참조)

가) 정량 및 정성평가는 교육연구단의 세부목표 별 주요 평가 지표인 붙임1의 평가 지표로 평가한다.

나) 교육연구단 기여도는 각종 소위원회 활동,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참여, 교육연구단장 평가 및 기타 연구교육단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그 외 붙임1의 평가 방식에 기재되지 않은 평가 방법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사업 평가 규정에 따른다.

3) 참여교수가 연구년 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과 행사에 참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장이 특별 기여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참여대학원생)

1) 교육부지침 교육부 훈령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 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기컴퓨터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은 입학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동기간의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다.

2)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4)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실적을 학기 단위로 평가한다 (붙임 2 참조).

5) 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 4항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가. 수행결과가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학교 본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나. 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대학원생에 될 수 없다.

6) 자격유지

가. 참여대학원생은 타 기관에 취업 및 자격증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를 어길 경우 국고지원비 반납 및 평가 시 교육연구단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자격박탈 상황 발생 시 반환금 모두 지도하는 참여교수의 책임으로 귀착되며, 이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차년도의 지원대학원생 결정 시 정상적인 지원대학원생 수에서 문제가 된 학생 수의 최대 3배수의 학생을 제할 수 있다.

7) 참여대학원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수학점

과 정	졸업이수학점	전공학점	잔여학점
석사	24	15	9
박사	36	18	18
통합	60	33	27

나. 석사학위 청구자격

- ① 제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지 1편 이상 발표 (발표예정증명 포함)
- ② 제1저자 (지도교수 제외)로서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에 논문 접수 또는 게재 (발표예정증명 포함)
- ③ 위의 ①과 ②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논문 최종심사에 관한 별도의 대학원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학과 내 발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 박사학위 청구자격

- ① 제 1저자로서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에 연구실적 1편 이상 게재 (발표예정증명 포함)해야 하며, 총 연구실적 200%이상 게재.
- ②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아래 환산 비율에 따라 계산

항목	지도 교수 제외한 총 저자 수	인정환산율
1	1인 or 제1저자	100%
2	2인	70%
3	3인	50%
4	4인	30%
5	5인 이상	20%

③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JCR 카테고리에서 JIF 상위 10%이상의 학술지 및 본 교육 연구단 지정 최우수학술대회 (BK21 CS분야 IF 4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CIE 환산 150%의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 11 조 (지원대학원생 및 의무사항)

1) 지원대학원생은 전기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으로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충족하며,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2)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4차 이하 학생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학기까지 통산평점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3)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5차 이상 학생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학기까지 통산평점이 3.75 이상이어야 한다.

나.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 실적을 6차까지 100%를 달성하고 졸업 전에 200%를 달성하여야 한다.

항목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상	졸업
의무규정	100% 이상							
준수	200% 이상							

제 12 조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1)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경력사항,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2)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 채용 공고 및 선발심사가 진행되며 중간퇴직으로 인한 T0 발생 시, 상시 채용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아래 자격 요건에 준하는 자로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한다.

가. 과거 2년 동안 주저자 SCI(E)논문 2편 이상인 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나.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진 연구인력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 다. 신진연구인력 T0는 제 9조 참여교수 평가 상위 50% 이내 교수들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1인당 T0는 연 단위 1명이다.
- 라. 참여교수의 신진연구인력 수혜 기간은 최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실적이 탁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3)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연구원 채용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임용은 최초 임용 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진연구인력 중 연구교수의 채용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횟수의 제한은 없다.

4)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외 출장은 최대 15일 이내로 제한한다.

5)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급여 이외의 지원(출장비, 연구공간, 기자재 및 비품 등)은 담당 참여교수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동안 SCI(E) 논문 3편 이상(주저자 2편 이상)을 게재 (발표예정 증명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은 재임용될 수 없으며, 향후 그 지도교수의 박사후연구원 T0가 제한된다.

7) 박사후연구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주요평가항목 등: 평가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저자로 게재된 SCI(E)급 논문(최근 1년 실적은 100% 인정하며, 최근 2년~1년 사이의 실적은 50% 인정함.)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교육연구단장은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참여교수 선정 혹은 지원대학원생 선정에 상당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 내·외부 평가위원회에 위임하되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다.

8)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가.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하에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9) 기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계약 기간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을 준수한다.

제 13 조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배정 방법 및 연구장학금 지급액)

1) 운영위원회는 사업기간 매년 1월 총 예산, 참여대학원생 수, 제 9조에 근거한 교수 별 평가점수, 신임교수 여부, 제 10조 4항에 근거한 참여대학원생 1인당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총액을 결정한다. 각 참여교수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결정한다.

가. 1단계 배분: 제 9조에 근거한 교수 별 평가점수와 제 10조 4항에 근거한 참여대학원생 1인당 평가 점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에 근거하여 참여교수 당 연구장학금 예산 배분 (예시: A, B, C 3등급으로 구분)

나. 2단계: 연구실별 참여대학원생 수, 신임교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 내 연구장학금 예산 차등 배분

2) 교육연구단장은 각 참여교수의 지원대학원생 수를 제한하거나, 평점 및 기타 실적 등에 따라 특정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구단장은 연구실적 (SCIE 논문, 우수학술대회 논문발표, 경진대회 수상, 논문상 수상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매년 1월에 결정되며, 2학기에는 연구실 별로 졸업과 입학에 따른 갱신만을 한다.

4) 지원대학원생 별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로 매월 지급한다. 단, 사업비 입금 지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석사과정생(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 박사수료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5) 연구실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학원생의 실적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C 등급은 박사 130만원, 석사 70만원의 최소 인건비를 지급하고 B 등급과 A 등급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의해 교내규정과 국가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예시 참조)으로서 B 등급은 박사 140만원, 석사 80만원, A 등급은 박사 150만원, 석사 90만원으로 차등화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차등 지급액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예) 연구실적에 따른 대학원생 차등 장학금 지급 기준 예시

등급	A (최우수 대학원생)	B (우수 대학원생)	C (대학원생)
석사과정생	90만원	80만원	70만원
박사과정생	150만원	140만원	130만원
박사수료생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

6) 제 5항의 차등 지급에 있어 등급 비율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되, C등급의 비율은 50% 이상을 유지한다. 연구실 별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차등 지급에 따라 교육연구단 총 지원대학원수는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의 실적에 근거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7) 장학금 이중 수혜

- 가. 본부와의 협조에 의거 BK21 대상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교내장학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한다.
- 나. 교외장학재단과의 이중수해도 가능하나, 교외장학재단 측에서 이중수혜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
- 다.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환산 규정에 의하여 BK21 장학금과 국가연구비 중 R&D 연구과제의 참여율 100% 기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 14 조 (성과급)

1) 성과급 대상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성과급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단장의 권한으로 정하며, 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국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단장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 가.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와 운영위원회/소위원회 봉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 나. 단장이 운용할 수 있는 배분 자원으로는 현금 및 지원대학원생 추가 배정 등이 될 수 있다.
- 다. 기타 구체적인 성과급 규모는 단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3) 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가. 현금 성과급은 1인당 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 나. 현금 성과급은 국고와 대학 교내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 다. 봉사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학기 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월말과 8월말에 시행한다.
- 라. 연구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학년 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월말에 시행한다.
- 마. 예산 상황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원대학원생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

4) 현금 성과급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가. 실적에 따른 현금 성과급

①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SCI(E)논문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된 주저자 논문만 해당)

- 교육연구단 SCI(E)논문의 환산보정 IF 평균치 대비 100% 상회 시 50만원, 200% 상회 시 100만원, 300% 상회 시 150만원 지급
 - CS분야 우수학술대회 (인정IF 2.0 이상)에서 주저자로서 논문 발표 시 최대 100만원 지급 (IF 2.0: 50만원 이내, IF 3.0: 70만원 이내, IF 4.0: 100만원 이내)
 - ② 참여교수의 산업체연구비 수주액
 - 교육연구단 산업체연구비 수주액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100만원 지급
 - ③ 참여교수의 정부연구비 수주액
 - 교육연구단 정부연구비 수주액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50만원 지급
 - ④ 참여교수의 기술이전액
 - 기술이전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100만원 지급
 - ⑤ 참여대학원생 최우수논문상 시상
 - 매년 1월 전년도 SCI(E)논문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된 제 1저자 논문만 해당) 중 평가위원회가 최우수 논문 1편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참여대학원생이며,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교육연구단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함.
- 나. 보직수당/행정참여에 따른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 ① 교육연구단장 행정 보직: 학기당 최대 50만원
 - ② 부단장 행정 보직: 학기당 최대 30만원
 - ③ 교육연구단 내 위원회 활동 (역할 및 회의 참여 횟수)에 따라 연 최대 30만원 지급
 - ④ 보고서/계획서 집필 참여도(역할 및 회의 참여 횟수)에 따라 연 최대 50만원 지급

5) 기타 성과급은 아래와 같다.

가.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운영위원회는 업적평가에 따라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참여교수에 준하는 현금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행정전담직원의 성과급: 교육연구단에서의 업무 시간 외 근무 및 우수한 성과를 수행하였을 경우 학기 당 최대 50만원의 현금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비 집행

제 1 조 (사업비 세출과목 및 집행 방법)

1) 국고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세출과목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건비,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나.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의 인건비 및 성과급,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금

다.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라. 국제화 경비 : 해외학회 논문발표, 해외연수,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 마. 교육연구단 운영비 : 사업팀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학술활동에 필요한 지원경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바. 교육과정 개발비 : 교과 과정 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사. 실험실습 및 산학 협력 활동 지원비 : 대학원 실험 실습을 위한 재료비 및 산학 협력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아. 간접비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경비

2) 사업비 예산 집행 방법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예산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기타 사업 운영경비 지출 예상 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단장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집행한다.

3) 교육연구단은 내부 감사 시스템으로 사업비 집행 신고센터(온라인 및 오프라인)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제 2 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1) 지원대학원생 별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로 매월 지급한다. 단, 사업비 입금 지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석사과정생(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 박사수료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2)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석사 월 180만원 / 박사 월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인센티브 등 성과급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3) 연구실적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4) 조기취업자는 15일 이후에 취업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4단계 BK21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조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6)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참여인력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1)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 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지도교수는 타 사업 연구비를 통해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실적에 따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국제화경비)

1) 국제화경비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 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해외 석학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록비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충족) 참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논문 1편당 주저자인 학생 1인을 지원한다.

나. 사업단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참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 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 분의 1 이상)

라. 교육연구단에서는 매년 2월과 8월 향후 6개월 간의 학회지원비 계획을 신청 받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마. 미집행된 예산은 교육연구단에서 회수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미집행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향후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해당 참여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다.

3) 지원 경비는 본교 여비규정 내 연구개발과제의 여비규정에 따르며, 항공료는 실비 정산한다.

4)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1 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 외에 대학원생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5) 장단기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원 대상: 장단기해외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며, 해외우수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우수연구실에서 연수를 받는 참여대학원생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한다. 참가 대학원생은 연구역량이 탁월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자로 한다.

- 현재 본 사업단에 참여대학원생으로, 각 대학원에 1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자.

- 본 사업단이 규정하는 지원 대학원생 선발기준 내규에 의거, 등록되어 현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나. 지원 방법: 매 차년도 참여연구실 연수 계획을 받아 교육연구단 예산 하에 조정함.

다. 지원 금액: 장/단기 연수와 같은 국제협력에 대한 경비지원은 BK21 플러스 규정 및 학교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단, 사업 예산이 부족할 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해외연수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하다.

라. 장단기해외연수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2 회에 걸쳐 선발하며,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에 준하는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연수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마. 선발 인원은 당해년도 장단기해외연수비 예산을 고려하여 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A. 연구실 기지원액 : BK21 Four 사업 장기해외연수 기지원액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적은 연구실 우선순위

B. 매칭(matching) 비율 : 방문기관 및 지도교수 연구실에서의 matching 비율이 높은 경우 우선순위

C. 연수기간 : 연수 기간이 장기간인 지원자 우선 순위

D. 연수기관과의 MOU 체결 여부 : 교육연구단과 MOU 체결된 기관으로의 연수일 경우 우선순위(신규 협약 체결 가능)

E. 학위과정 순 :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석사과정 순으로 박사과정 우선순위

F. 영어성적 : 영어성적증명서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

바. 장단기해외연수비는 체재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아래 체재비 산정기준을 따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교내 연구개발과제의 여비 정액표의 일할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체재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장단기해외연수비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다)

A. 체재비 산정 기준: 체재비는 학교 여비 규정을 따른다.

B. 해외연수 기간이 15 일 이상~2 개월 미만 인 경우 교통비(실비)와 체재비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C. 장기해외연수 기간이 2 개월 이상 6 개월 이내인 경우 교통비(실비)와 체재비의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사. 장단기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연수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초청장 및 연수기관 소개서 등)를 사전 제출하고 장기해외연수 종료 및 귀국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외석학초빙에 관한 지침은 아래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의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최대 지원액은 초청자 1 인당 최대 100 만원 이내로 한다. 단, 교육연구단 차원의 국제학술대회, 해외석학 포럼 등의 자체 학술행사를 위한 해외석학초빙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교육과정 개발비)

1) 교육과정 개발비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이며, 아래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한다.

- 가. 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는 능동교육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 나.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교과목 콘텐츠 및 온라인 DB 개발 비용
- 다. 산학 프로젝트 교과목의 실험실습 비용
- 라. 신입 대학원생 모집을 위한 대학원 연구실 오픈랩 행사 비용
- 마. 전공 관련 학부 동아리 지원 비용

제 6 조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1)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된다.

가.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하여 소모성 재료비 또는 시제품 개발비용으로 1팀당 150만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나.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실비 지원된다.

다. 산학 학술 워크숍 개최 및 취업 및 창업 특강과 산학자문 회의 전문가 초빙에 실비 지원된다.

제 7 조 (교육연구단 운영비)

1) 사업운영경비는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성과급, 회의 및 행사개최비, 각종행사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2) 국내여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 전문학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대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출장자가 반드시 발표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표 논문 한 편당 최대 2인까지 지원된다.

3) 학술활동지원비는 국내전문가 초청비로 사용된다.

가. 국내전문가 초청에 대한 지침은 인하대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의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최대 지원액은 초청자 1인당 지역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은 20만원, 그 외의 지역은 30만원으로 한다.

4)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직원에게 대한 성과급은 내규 2장 14조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5) 참여교수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연구업적평가 결과 및 교육연구단 봉사 및 참여도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 하에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가. 성과급은 본 규정의 2장 14조에 따라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전년도 및 당해년도 실적)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 최우수 업적상, 우수 업적상, 우수 업적 증진상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나. 본 규정의 2장 14조에 의거 논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업적평가는 교육연구단 <교수 연구업적 평가>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 하에 이를 심의 및 최종 확정한다.

라. 업적평가 항목별 배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지한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마. 업적평가 이후 발생한 실적은 차년도 업적평가 시에 반영한다. 단, 단순 누락에 의한 실적은 업적에서 제외한다.

제 4 장 연차별 교수 평가

제 1조 (연차 평가 시기 및 방법)

1)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평가 방식을 준수하며 본 규정의 제 2장 9조의 내용을 따른다.

가. 기 참여교수나 비참여교수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기간은 연말 연초에 평가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2) 참여교수 변경 시에는 교육연구단의 기여도와 교육연구단장 평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대학원생의 연구실적과 정성평가 실적을 포함한다.

3) 예산 배분 시에는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대학원생 1인당 연구실적의 정량 및 정성평가,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모두 포함하여 고려한다.

제 2조 (업적평가를 위한 대학원생 실적 기준)

1) 참여교수는 교육부 참여대학원생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한다.

2) 비참여교수는 지원대학원생이 따로 없으므로, 신청서 당시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지도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함.

제 5 장 홈페이지 운영 및 구성

제 1조. (홈페이지 운영 및 구성)

1) 한국연구재단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교육연구단 소개

나. 연구실적

다. 대학원 교육

라. 자료실

마. 게시판

바. 기타 사업성과 홍보자료

2)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시기는 시행세칙에 따르되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교육연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단장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홈페이지 운영자

가. 홈페이지 운영은 단장이 지명하며 운영자는 행정직원, 조교, 대학원생, 참여교수 혹은 외부 전문운영자가 될 수 있다.

나. 운영자에게는 소정의 운영비 및 장학금 혹은 자문비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개정 지침에 상세해설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